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12년 6월 일 (제311회)

**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 
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박문희 의원외 6명
발의연월일	2012년 6월 1일

**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 
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  
(박문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2년 6월 1일  
발 의 자 : 박문희, 김재중, 김동환,  
김영주, 노광기, 이광희,  
장병학

**1. 제안이유**

-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

**2. 주요골자**

-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“실·국·본부장, 담당관, 실·과·팀장급”을 “실·국·단·본부장, 담당관·과장급”으로 개정함. (안 제2조제2호)

**3. 개정조례안 : 별첨**

**4.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**

**5. 참고사항**

- 관계법령 : 별첨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규제관련사항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여부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보조기관중 실·국·본부장, 담당관, 실·과·팀장급”을 “보조기관 중 실·국·단·본부장, 담당관·과장급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,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</p> <p>2. <u>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·국·본부장, 담당관, 실·과·팀장급</u></p>	<p>제2조(범위)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-----<u>보조기관 중 실·국·단·본부장, 담당관·과장급</u></p>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

제2조 (실장·국장·단장·본부장·담당관·과장 등 보조 및 보좌기관의 직급) 충청북도(이하“도”라 한다) 본청의 실장·국장·단장·본부장·담당관·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·출장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.